

영등포구의회
제194회 임시회

『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6. 4. 29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31호로 2016년 4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“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”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명 :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

나. 구성기관 : 총 53개(광역자치단체 4, 기초자치단체 49)

다. 기 능

-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
-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
-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, 교육,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
-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·단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지방자치법 제152조 (행정협의회의 구성)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2조제2항에 따라 “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”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,
- 본 규정은 총 4장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제1장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 명칭, 목적, 기능, 구성 등 총괄적인 내용을 규정 하였고,
- 제2장에서는 협의회 의 회장·부회장의 선임방법, 임기 등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두었으며,
- 제3장에서는 의안 제출, 의견 청취, 회의결과 조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문위원, 분과위원회, 실무협의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며,
- 제4장에서는 협의회 의 공동사무,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 부담, 자문위원 수당 등 재정부분이 규정되어 있음.
- 본 행정협의회 구성취지가 “마을만들기 사업”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정보를 공유하고,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이며, 이에 따라 “운영규정”을 정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로 보여짐.

※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경과 별도첨부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2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다.